

의안번호	제 62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62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환경피해의 지속적 증가 및 다양한 오염원인 등으로 피해 인과관계 규명에 전문성 요구 증대
- 다중성을 띤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위원회 수당 지급액 비현실화, 중앙 및 타 시·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수당 지급 필요

## 2. 주요내용

- (안 3조) 위원회 출석 및 관계 전문가 수당 지급 시
  - 기 존 :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 실비 지급
  - 변 경 : 예산의 범위 내 수당 등 실비 지급

## 3. 의안전문 : 불 입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입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## 6. 비용추계서 : 불 입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등 실비를”을 “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신 · 구조문대조

현행	개정
<p>제3조(위원회 운영)            ①~③(생략)           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위원회 운영)            ①~③(생략)           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</u> 지급할 수 있다.</p>

[별표]

## 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(제3조제4항 관련)

구분	수 당	단위	단 가	지급대상
위 원	출석수당	일당	- 출석수당 · 기본수당 : 100,000원 · 초과수당 : 30,000원  - 원거리 출석수당 · 50km초과~100km이내 : 30,000원 · 100km초과~200km이내 : 50,000원 · 200km초과 : 70,000원	- 회의에 참석한 위원 · 기본수당 : 2시간 이내 · 초과수당 : 2시간 초과 (1일 1회에 한정하여 지급) ※ 다만, 4시간 초과 시 초과수당 1회 추가지급  - 편도거리기준
	안전검토수당	건당	- 기본수당 : 50,000원(건당)	- 사건별로 기본수당 지급 (심사보고서 검토 및 교정)
전문가	현지조사수당	일당	- 현지조사수당 : 150,000원  - 원거리 출석수당 · 50km초과~100km이내 : 30,000원 · 100km초과~200km이내 : 50,000원 · 200km초과 : 70,000원	- 분쟁의 인관관계 조사 및 규명을 위한 현지조사 수당 (1일 1회에 한정하여 지급)  - 편도거리기준
	자문 및 의견서 작성 수당	건당	- 자문 및 의견서 작성 : 200,000원	- 분쟁사건 현지조사에 따른 자문 및 의견서 작성 제출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(이하 "관계전문가"라 한다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(實費)를 지급할 수 있다.

#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환경피해의 지속적 증가 및 다양한 오염원인 등으로 피해 인관관계 규명에 전문성 요구 증대
- 다중성을 띤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위원회 수당 지급액 비현실화, 중앙 및 타 시·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 된 수당 지급 필요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환경분쟁 사건별 선임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참석, 안전검토, 의견서 제출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,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

## 3. 관련조문

- 위원회 운영(안 3조제4항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

구분	수당내역	수당 지급액	비고
재정위원	출석수당	100천원/일	2시간 초과 시 30천원 추가
	안전검토 수당	50천원/건	
전문가	현지조사 및 자문수당	350천원/건	

※ 원거리 출석수당 : 편도 이동거리 50km를 초과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추가 지급  
50km~100km이내 : 30천원, 100km~200km이내 : 50천원, 200km이내 : 70천원

### ○ 산출근거

- 재정위원 안전검토 및 회의 참석수당 150천원×30명 = 4,500천원
- 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수당 350천원×25명 = 8,750천원
- 원거리 수당 50천원×15명 = 750천원

- 부담비율 : 일반회계 [도 100%]

## 나. 추계 결과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4백만원씩 향후 5년간 7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

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도비 일반회계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 '21년)	2차년도 ( '22년)	3차년도 ( '23년)	4차년도 ( '24년)	5차년도 ( '25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세 출							
위원 및 전문가 수당		14,000	14,000	14,000	14,000	14,000	70,000
재원 조달		14,000	14,000	14,000	14,000	14,000	70,000
의존 재원	국고보조금	-	-	-	-	-	-
자체 수입	도비 일반회계	14,000	14,000	14,000	14,000	14,000	70,000
시·군비		-	-	-	-	-	-
자부담		-	-	-	-	-	-

※ 부담비율 : 도비 100%